

정정신고(보고)

2023년 4월 27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투자설명서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6년 2월 29일

3. 정정사유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(기타비용,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 포함)
-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
- 시행령,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2.8.30 시행)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
4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요구 · 명령관련 여부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투자설명서 전체	아니오	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 변동성(연 환산)에 따른 투 자위험등급 변경	6등급(매우 낮은 위험)	5등급(낮은 위험)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아니오	정기갱신	-	작성기준일 기준 작성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아니오	시행령, 금융투자 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2.8.30 시행)	----- 초과일부 터 3개월까지(부도 등 으로 처분이 불가능하 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 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 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 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 다.	----- 초과일부 터 3개월까지(부도 등 으로 처분이 불가능하 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 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 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제2부. 10. 라. 이 집합투	아니오	최근 결산일 기 준 이전 3년간	-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	-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

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	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에 따른 투자위험등급변경	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이 <u>0.34%</u> 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매우 낮은 6등급으로 분류됩니다.	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이 <u>0.70%</u> 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낮은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.
제2부. 13.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※ 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	아니오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
제3부.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아니오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, 작성기준일 기준 작성
제4부. 1.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아니오	정기갱신	-	작성기준일 기준 작성
제 5 부. 2. (2) 임의해지	아니오	시행령,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2.8.30 시행)	-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	-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

			<p>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	<p>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(<u>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</u> <u>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<u>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</u> <u>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
제 5 부. 3. 가. (2) 자산운용보고서	아니오	시행령,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2.8.30 시행)	<p>- 다만,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u>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집합투자업자가 <u>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</u>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(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</p>	<p>- 다만,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</u>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집합투자업자가 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</u>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(같은 조</p>

			<p>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)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</p> <p>4. (생략)</p>	<p><u>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)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제 5 부. 3. 나. (2) 수시공시	아니오	시행령,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2.8.30 시행)	<p>-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자체 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</p>	<p>-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자체 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(<u>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</u>는 설정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(<u>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</u>는 설정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</p>

			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(이하 생략)	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(이하 현행과 같음)
제5부. 4. 가. 이해관계인 과의 거래내역 나. 집합투자기 구간 거래에 관 한 사항	아니오	정기갱신	-	작성기준일 기준 작성